## 학칙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② 악교는 악생의 연상적응덕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습 하기제 또는 이터시하기제를 우역한 수 있으며 세보사한은 총작이	제28조의3(실습학기제) ① 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■제/9조(주면) (1) 주업은 수가수업 ()F가수업 방송·통신수업 등이	제29조(수업) ① 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<u>계절수업</u> , 방송·통신에 <u>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</u>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 신설	부 칙 제1조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